

# 판례를 통해 본 출판저작권 분쟁실태

「한국저작권판례집」에 나타난 몇가지 사례

지난 1987년 7월1일부터 저작권법이 전면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저작권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와 분쟁의 조절을 위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장인숙)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저작권분쟁 조정신청을 다뤄왔던 동위원회는 국민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저작권관계자료집 시리즈를 꾸준히 발행해오고 있다.

이번에 출간된 「한국 저작권 판례집」은 그 일곱번째 자료집으로 개정저작권법 시행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내려진 저작권 관련 판례 36건을 참조법조문과 사건개요, 판결문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수록 판례들은 동위원회 자료실에선 수집한 판결정본과 「판례월보」 「법원공보」 「법률신문」 「법률구조신문」 「대법원판례집」 「지방법원판례집」에서 찾아낸 판례들을 모은 것으로, 이해 당사자들에게 법적용에 있어 판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사전지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나아가 법해석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이론상의 대립들을 해소시키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에 수록 판례들 중 저작권법 개정 이후의 출판물 관련 부문을 발췌 소개한다.(신청인 및 피신청인, 문제 저작물의 제목 등은 이니셜이나 伏字를 사용했다.)

## 번역물의 무단 개작

번역문학가 A씨는 한국문학작품을 번역해 해외에 소개하는 등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한국○○진흥재단과 소설 「아름다운 ○○」의 번역 출판계약(이 중 A씨는 번역권과 교열 후 정정의 필요가 있을 때는 재단의 의견에 따른다는 내용 포함)을 체결하고 위 작품의 번역을 완료해 재단측에 교부하고 그 대가를 지불 받았다. 그러나 위 작품의 원저작자가 A씨의 번역물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출판을 거부해 재단측은 그 번역물의 교열을 맡은 B씨에게 별도로 번역을 의뢰하고 B씨는 위 번역물을 참고해 일부 수정한 후 재단측에 교부했고 재단측은 A씨의 번역물 제목과는 다른 제목으로 출판하게 된 바, A씨는 번역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사과광고문 게재를 청구했다.

판결에 따르면, 타인의 저작물을 그 창작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언어로 번역한 자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번역물에 관한 법률상 저작권을 당연히 갖게 됨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최근 간행한

「한국저작권판례집」에는

개정저작권법 시행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내려진 저작권 관련 판례

36건이 참조법조문과 사건개요,

판결문 등과 함께 소개돼 있어,

저작권법을 둘러싼 분쟁해결의 사전지식

및 법해석에 관련된 이론적 대립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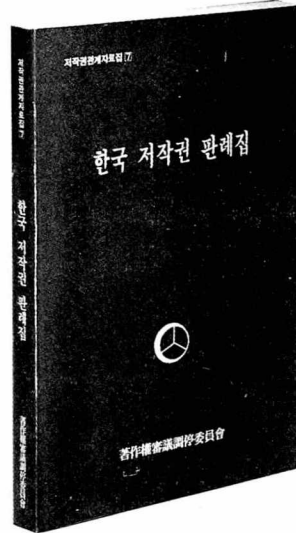
해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으로 비록 번역출판계약상의 협의에 의한 교열과 정정의 절차를 마치지 않았다고 해도 A씨의 번역저작권은 발생했다고 보고, B씨의 번역행위는 A씨의 번역권고를 참고자료로서 상당부분 의존해 무단개작함으로써 A씨의 번역저작권을 침해한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침해행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재단측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금전배상은 인정하되 사과광고 게재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제1부 1990년 2월27일 판결)

## 출판계약 종료 후의 판매

신청인 W社は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서적출판업과 영화제작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신청인 L씨는 서적출판업자로서 W사로부터 수권을 받은 A사와 W사의 출판물 「○○○의 영어 세계 프로그램」을 비롯한 영어학습 교재와 테이프 등을 국문으로 출판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종료 후 1년 내에만 위 서적 등의 재고를 처분할 수 있도록 계약했다. 그러나 피신청인 L씨는 계약의 종료 후에도 위 책자에 W사로부터 위 서적들을 출판할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내용의 기재를 하여 인쇄·배포 및 판매를 했는데, W사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타사의 제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위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기만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부정경쟁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배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해 W



사의 위 신청이유를 인정하고, W사가 L씨를 위해 담보로 금 1천만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당시 L씨가 발행·제정한 책자 및 상품들에 W사의 상표나 상호 기재를 금지하고 L씨와 독점출판계약을 체결했다는 취지의 기재도 금지했다. 또한 W사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기재 상표·상호를 말소하고 문제가 된 물건을 피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0부 1990년 1월6일 결정)

## 제호의 저작물성

신청인 L씨는 「자유○」이라는 제호의 자서전을 저술한 자이고 피신청인 R씨와 Y씨는 사상서인 「자유○, 자유○」의 저자와 출판사로, L씨는 R씨의 저작물이 베스트셀러 상위를 기록하게 된 직후에 피신청인들이 저작물의 출간, 발매 및 광고를 하기 시작하자 피신청인들의 그러한 행위가 자신의 저작물에 관한 권리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하며 R씨의 저작물의 제작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법원은, 저작물의 제호는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되지 않고 책 제호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주지의 상품 표시가 아닐 뿐 아니라 책 제호 자체나 그 내용, 책의 외관과 장정을 살펴볼 때 영업주체나 상품주체의 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없다고 보고 신청 기각.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0년 9월21일 판결)

## 저작권양도등록

신청인 B씨 외 1인은 그들의 채무자 S씨가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수험학습용 영문해설서 「○○실력기초」 및 그 개정판 「○○실력기초영어」의 저작권 일체를 양도함에 따라 위 저작물을 출판·배포했고, 피신청

인 C씨는 위 저작물을 S씨로부터 별도로 양수하여 문화공보부에 저작권양도등록을 하고 출판·배포했다. 이에 대해 B씨 등은 저작권침해행위 금지를 청구.

판결에 따르면, 저작권 제52조에서 제3자라 함은 그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있어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에 한하므로 S씨의 양도행위는 형사상 배임행위이고 C씨의 양수행위는 그러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서 무효임으로, 그러한 무효 양도계약에 근거한 저작권등록 역시 무효라고 판결. 또한 S씨에 대한 신청인 B씨의 저작권 양도등록청구권의 시효소멸이라는 피신청인 C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저작권은 물건과 같은 배타적 효력을 갖는 권리임에 비추어 그 자체의 효력으로서 스스로 대항요건인 등록을 구비할 권한을 포함한다고 보아 원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적법하게 양수한 자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존속기간을 경과해 소멸되지 않는 한 민법상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적법하게 양도받은 저작권의 파생적인 권리로서 대항요건 구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고 신청인 B씨의 청구를 모두 인정.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7부 1989년 5월23일 판결)

## 출판제널 정기구독안내

1년분 : 값 20,000원  
반년분 : 값 11,000원

전화문의: 732-1431~3